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83호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제출일자 : 2022. 11. 1.
4. 회부일자 : 2022. 11. 3.

Ⅱ. 제안이유

○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(안)을 수립하여 제출함

Ⅲ. 주요내용

○ 기금운용계획(안) 규모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	2022년도 기금운용계획	증 감 액	비 고
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(재정안정화계정)	1,463,586,446	464,819,465	998,766,981	

Ⅳ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
Ⅴ. 검토 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○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83호로 제출되어 2022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
○ 이에 포함된 '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'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'지방기금법') 및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(이하 '재정안정화기금 조례')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(단위: 천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수입 항목	'23년 수입액	'22년 수입액	증감	지출 항목	'23년 지출액	'22년 지출액	증감
합 계	1,463,586,446	464,819,465	998,766,981	합 계	1,463,586,446	464,819,465	998,766,981
교특회계 전입금	970,000,000	462,000,000	508,000,000	비융자성 사업비	-	-	-
예치금 회수	464,819,465	-	464,819,465	예치금	1,463,586,446	464,819,465	998,766,981
이자수입	28,766,981	2,819,465	25,947,516	기본경비	-	-	-

가. 교특회계전입금

○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(이하 '기금')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제침체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치·운용되는 법정기금입니다.

○ 동 기금의 2023년도 수입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,700억원, 예치금 회수 4,648억 1천 9백만원, 이자수입 287억 6천 7백만원을 포함한 1조 4,635억 8천 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○ 먼저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액인 교특회계전입금은 '재정안정화기금 조례'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 조성재원으로,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 반영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.

○ 이는 2023년도 예산안 세입에 반영된 '중앙정부이전수입' 중 '보통교부금 내시분' 1) 1조 5,762억 4천 7백만원의 61.5%에 해당하는 9,700억원을 기금으로 전출함에 따른 것으로,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재원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--

1)'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통지',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-5187(2022.10.7.)
'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', 교육부 2022.10. 49쪽
<기준재정 수요액-재정결함보전>

참고22 **재정안정화 지원 산정 내역**

(단위: 천원)

구분	교부액
서울	1,576,247,420

나. 이자수입

○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이자수입은 287억 6천 7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이자수입 28억 1천 9백만원보다 259억 4천 8백만원(920.3%)증액된 것으로, 이는 2023년도 기금 수입액(9,700억원)과 예치금 회수액(4,648억 1천 9백만원)을 포함한 조성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.

○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'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업무 취급 약정' 에 따라 지정 금고인 농협은행을 통해 동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, 금리는 매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'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금리' 를 기준으로 누적 변동률 ±3 이상인 경우 이율이 조정되고 있습니다.

○ 이와 같은 금리 기준에 따라 동 기금의 이자수입은 현재 2022년 10월 기준 적용금리 2.68%로 추계하고 있으나, 계속되는 금리상승에 따라 앞으로 이자수입에 대한 금리는 변동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바,

서울시교육청은 기금의 이자 수입이 약정 기준에 따라 이율변동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표-1] 기금 이자수입 산출 내역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금액	원금	일수	적용금리	이자수입 (예상액)
합계	1,434,819,465	1,434,819,465	-	-	28,766,981
예치금 회수 ('22년 조성액)	464,819,465	464,819,465	365(1년)	2.68%	12,457,162
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('23년 조성액)	970,000,000	242,500,000	365(1년)		6,499,000
		242,500,000	275(9월)		4,896,507
		242,500,000	184(6월)		3,276,208
		242,500,000	92(3월)		1,638,104

※ 2022. 10월 기준 교육금고(농협) 정기예금 적용금리 2.68% 적용

※ 재원 확보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자 수입 계산

다. 기타

○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바, 이는 동 기금이 당장 필요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조성된다기보다 향후 발생할 재정수입 감소에 대비한 예비적 차원에서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○ 한편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'지방기금법' 제13조[2]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(기금운용심의위-6, 2022.10.14.) 의회에 제출[3]되었는바, 동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그러나 그동안 교육재정의 악화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반대해 온 교육청의 입장을 생각할 때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체의 7.5%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원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이 과다한 교육재정 운용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규모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---

2)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(약칭: 지방기금법)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

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"예수금"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